

미얀마 석유·가스개발법제에 대한 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얀마는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 때문에 미얀마에는 석유·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¹. 그런데도 군사정권의 폐쇄적인 경제체제 운영, 불합리한 투자 관련 법령, 전력·도로·개발 장비 등의 인프라 미비 및 소수민족과의 무력 충돌,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등을 이유로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고², 그 투자도 특정 산업,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얀마 석유·가스 보유 현황>

구분	생산량 (2013년 추정치)	매장량 (2010년 추정치)	매장량 비교 (세계비중)
원유 (barrel)	586만	3.2억	0.25%
천연가스 (cubic meters)	128.94억	16조	1.07%

(출처: 생산량(USGS 2016. 5.), 매장량(KOTRA 2016. 2.))

2011년 민선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얀마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점차 완화되었고, 미얀마 내부의 무력충돌 또한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민선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제를 개정하였는바, 특히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1988)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새롭게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민선 정부는 노력의 결과 對 미얀마 외국인투자 규모는 2013/14 회계연도 40억 달러,

¹ 코트라, 2016 미얀마 진출전략(2015), p8~9

² 외교부, 2013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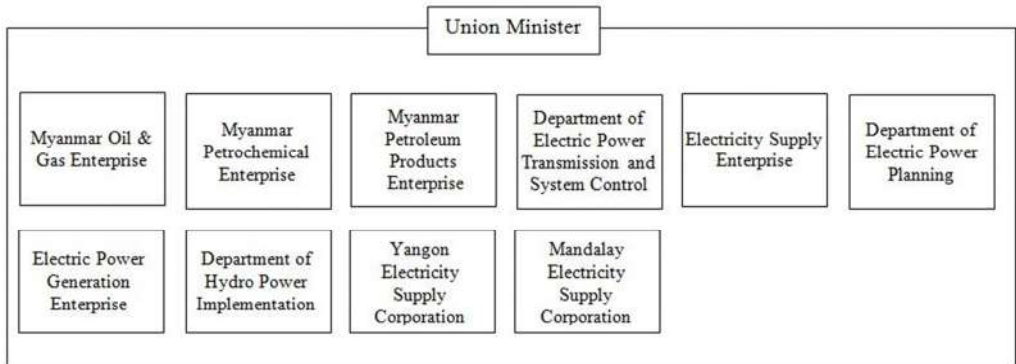
2014/15 회계연도 80억 달러, 2015/16 회계연도 9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미얀마 주력산업은 농업, 광업, 임업 등 일차 산업이며, 해상 천연가스전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자원개발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코트라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월 기준 총 53개의 육상 광구 중 30개의 광구(국제입찰 23개)가, 총 51개의 해상광구 중 38개의 광구(국제입찰 13개)가 운영 중이다.

2015년 총선에서 미얀마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압승하였고, 2016년 아웅 산 수 치(Daw Aung San Suu Kyi)의 측근인 우 틴 초(U Htin Kyaw)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얀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하였다. 새로운 민선정부 역시 외국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바, 이에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미얀마의 석유·가스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미얀마의 석유·가스개발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석유·가스개발 관련 정부기관

미얀마 석유·가스개발의 소관 부처는 전력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이다. 전력 에너지부는 2016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2016호에 따라 기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와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가 통합되면서 신설되었다³.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구조>



³ Myanmar International TV Channel, Reformed Ministries: 21 Ministries Identified, 2016. 3. 17., (<http://www.myanmarinternational.tv/news/reformed-ministries-21-ministries-identified>)

전력에너지부 산하의 국영기업 중 석유·가스와 관련된 국영기업은 다음과 같다.

- ① 국영석유가스공사(Myanmar Oil & Gas Enterprise): 석유 및 가스 매장량 탐사, 개발 및 생산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석유기업과 육·해상광구의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을 체결하는 기관이다.
- ② 국영석유화학공사(Myanmar Petrochemical Enterprise): 정제공장, 요소비료공장, LPG 공장, 메탄올공장을 운영하면서 석유제품(휘발유, 디젤, 항공유(ATF), 요소비료, LPG, 석유 코크스 등)을 생산한다.
- ③ 국영석유제품공사(Myanmar Petroleum Products Enterprise): 석유제품의 도소매 유통을 총괄하는 국영기업이다. 4개의 주요 연료터미널과 25개의 연료서브터미널, 12개의 연료 충전소 등을 보유하고 있다.

III. 석유·가스개발 관련 법규 체제

1. 헌법 및 공기업법

2008년 5월 제정된 미얀마 신헌법(2008 Myanmar Constitution)에 의하면, 미얀마의 모든 토지와 모든 천연자원의 궁극적 소유자는 국가이다. 다만, 정부는 경제주체가 국가 소유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장하여야 한다(2008 Myanmar Constitution 제37조).

1989년 공기업법(the 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s Law 1989)에 의하면, 석유·가스의 탐사, 추출, 생산, 판매는 공기업만 영위할 수 있다(공기업법 제3조). 다만, 민간기업이 정부와 합작하여 석유·가스에 관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공기업법 제4조).

2. 유전법 및 석유법

미얀마의 1918년 유전법(the Oilfields Act 1918)과 1934년 석유법(the Petroleum Act 1934) 등 미얀마 석유가스에 관한 기본법은 광업활동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업 활동은 주로 생산물분배계약⁴에 의하여 규율된다. 위 기본법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18년 유전법과 2010년 유전법(the Law Amending Oilfields Act 2010)은 미얀마 국영석유가스 공사에게 유전법상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1918년 유전법 제4조, 2010년 유전법 제5조), 유전법상 권한에 관한 사항(1918년 유전법 제13조), 일반적 금지사항(접근제한지역, 안전수칙 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

⁴ 유전법에서는 계약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1934년 석유법, 2010년 석유법(the Law Amending Petroleum Act 2010) 및 1937년 석유 규정(the Petroleum Rules 1937)에서는 석유의 수입·운송·저장·생산·정제·혼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1934년 석유법 제1장), 석유의 시험에 관한 사항(1934년 석유법 제2장), 벌칙(1934년 석유법 제3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석유·가스개발 관련 법규

그 밖에 석유·가스개발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주요 법규는 아래와 같다.

- the Oilfield Rules 1936
- the Oilfields (Labor and Welfare) Act, 1951
- the Burma Petroleum Concession Rules, 1962
- the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Regulation) Act, 1957 and the Law Amending Oil Resources (Development, Regulation) Act, 1969
- the Law Amending the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Regulation) Act, 1969
- the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Emission Guideline, 2015
-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 2015

4. 환경 관련 법규

석유·가스개발에 적용되는 환경 관련 주요 법규는 아래와 같다.

-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2012
-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Rules 2014
-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2015
- the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Emission) Guidelines 2015
-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Law 1998
- the Yangon Water-works Act 1885
- the Water Power Act 1927

- the Underground Water Act 1930
- the Forest Law 1992
- the Oilfields Act 1918
- the Petroleum Act 1934
- the Oilfield (Workers and Welfare) Act 1951
- the Factories Act 1951
- the Private Industrial Enterprise Law 1990
- the Land Acquisition (Mines) Act 1885

IV.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1. 생산물분배계약 개관

생산물분배계약은 생산물분배 방식의 자원개발계약을 지칭한다. 미얀마에서 석유·가스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영석유가스공사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 국영석유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관계기관의 검토 및 승인도 필요하다⁵.

- 구 에너지계획국(Energy Planning Department)⁶
- 법무부(Attorney General's office) 산하 계약국(Contract Department)
-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⁷
-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 자연자원·환경보전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⁸

⁵ Norton Rose Fulbright,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in Myanmar, 2015. 10.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33109/oil-and-gas-exploration-and-production-in-myanmar>

⁶ 구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가 개편되면서 현재 폐지됨

⁷ 구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⁸ 구 환경보전임업부(Ministr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orestry)

2. 생산물분배계약의 종류

실무적으로 육상광구(onshore) 표준계약서, 연안광구(shallow offshore) 표준계약서, 심해광구(deep offshore) 표준계약서 등 총 세 종류의 표준생산물분배계약을 사용하고 있다⁹.

3. 계약당사자 및 국영석유가스공사 참여지분

생산물분배계약의 당사자는 국영석유가스공사와 석유·가스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계약자”)이다. 국영석유가스공사는 생산물분배계약의 당사자이자,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관리기관이기도 하다.¹⁰

국영석유가스공사는 육상광구의 경우 undivided interest의 15%까지, 해상광구의 경우 undivided interest의 20%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국영석유가스공사는 이를 25%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¹¹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19 STATE PARTICIPATION

19.1 MOGE shall have the right to demand from CONTRACTOR a fifteen percent (15%) undivided interest in the total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and MOGE may extend up to 25% at its own discretion.

4. 계약기간 및 연장

표준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준비기간, 조사기간, 탐사기간 및 생산기간으로 구분된다.

(1) 준비기간(preparatory period)

계약자는 준비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환경관리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보고를 수행하여야 하고,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환경보호’ 부분을 참고)¹². 준비기간은 약 6개월이며, 국영석유가스공사의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다¹³.

⁹ Getting The Deal Through, Oil 2016, Myanmar, 15번 답변

¹⁰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p8

¹¹ Getting The Deal Through, Oil 2016, Myanmar, 13번 답변

¹² Getting The Deal Through, Oil 2016, Myanmar, 17번 답변

¹³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p9

(2) 조사기간(study period)

조사기간은 해상광구의 경우에만 요구되는 기간이다. 조사기간은 탐사기간 전 기술적 평가를 하는 기간이며, 조사 결과는 전부 국영석유가스공사에 공개되어야 한다. 조사기간은 연안광구의 경우 6 ~ 12개월이며, 심해광구의 경우 2년이다¹⁴.

(3) 탐사기간(exploration period)

탐사기간은 매장된 자원의 규모, 형태, 위치, 품위 및 부존량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는 탐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간을 말한다. 조사기간은 총 6년이다(최초 3년, 연장 2년, 재연장 1년)¹⁵.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3

TERM

3.2 The **Exploration Period** shall begin on the Commencement of the Operation Date and shall continue for three (3) consecutive years ("Initial Exploration Period"). If CONTRACTOR after fully disclosing the results of the Initial Exploration Period to MOGE, decides not to pursue with any further Exploration Operations in the Contract Area, CONTRACTOR shall have the option to terminate this Contract by way of written notice to MOGE, given not later than thirty (30) days before the end of the Initial Exploration Period. Thereafter CONTRACTOR shall relinquish its rights and be relieved of any or all further obligations pursuant to this Contract from the effectiveness of the termination notice.

In the absence of such termination notice, CONTRACTOR may extend, at its sole discretion, the Exploration Period for additional three (3) consecutive years, two (2) years as the ("First Extension Period") and another one (1) year as the ("Second Extension Period"), provided that, it shall have fulfilled its obligations hereunder for the then current period.

If CONTRACTOR after fully disclosing the results of the First Extension Period to MOGE, decides not to pursue with any further Exploration Operations in the Contract Area, CONTRACTOR shall have the option to terminate this Contract by way of written notice to MOGE, given not later than thirty (30) days before the end of the First Extension Period. Thereafter CONTRACTOR shall relinquish its rights and be relieved of any or all further obligations pursuant to this Contract from the effectiveness of the termination notice.

In the absence of such termination notice, CONTRACTOR may extend, at its sole discretion, the Exploration Period for additional one (1) year ("Second Extension Period"), provided that, it shall have fulfilled its obligations hereunder for the then current period.

¹⁴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p9~10

¹⁵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p9~11

(4) 생산기간(production period)

생산기간은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생산기간은 (i) 개발완료일로부터 20년이 지나간 시점 또는 (ii) 생산물분배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종료한다¹⁶.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3

TERM

3.2 A **Development and Production Period** shall commence with respect to each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n the date that CONTRACTOR gives notice of Commercial Discovery relating to such Area and shall continue until the expiration of twenty (20) year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Plan for such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r the expiration of the sale(s) contract(s) relating to the sale and purchase of Petroleum proceed hereunder whichever is longer.

5. 의무적 포기(relinquishment)

생산물분배계약 종류에 관계없이, 계약자는 탐사기간 종료시점에, 탐사결과 상업적 발견이 확인된 지역, 개발 및 생산 지역을 제외한 계약지역을 포기하여야 한다¹⁷.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4

RELINQUISHMENTS

4.1 Not later than at the end of the Exploration Period, all of the Contract Area other than Discovery Areas and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s shall be relinquished.

4.4 At least thirty (30) days in advance of the date of the relinquishment under Section 4.1 and Section 4.2, CONTRACTOR shall notify MOGE of the portions of the Contract Area to be relinquished. In connection with any relinquishment of less than all of the Contract Area, the CONTRACTOR and MOGE shall consult with each other in order to ensure that each individual portion of the Contract Area relinquished shall, so far as reasonably possible, be of sufficient size and shape to enable Petroleum Operations to be conducted thereon.

¹⁶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p9~11

¹⁷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p9~11

6. 비용보전(cost recovery)

계약자는 해당 지역에서 그 해에 생산된 석유·가스자원의 총량에서 생산물분배계약에 정해진 로열티 등을 공제한 석유(가용석유, available petroleum)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개발에 사용된 비용을 전보 받을 수 있다. 이 때 적용되는 비율은 육상광구와 수심 600피트 이하의 연안광구의 경우 최대 50%를, 수심 600피트 이상의 연안광구와 수심 2,000피트 이하의 심해광구는 최대 60%를, 수심 2,000피트 이상의 심해광구의 경우 최대 70%를 한도로 한다¹⁸.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9

COST RECOVERY AND PROFIT ALLOCATION

- 9.1 CONTRACTOR shall provide all funds required to conduct Petroleum Operations under this Contract and may recover its costs and expenses only out of Cost Petroleum in the manner and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Section 9.4. CONTRACTOR shall have the right to use free of charge Petroleum produced from the Contract Area to the extent it considers necessary for Petroleum Operations under this Contract.
- 9.4 CONTRACTOR shall recover all costs and expenses in accordance with Annexure "C" in respect of all Petroleum Operations hereunder to the extent of and out of a maximum of fifty percent (50%) of all Available Petroleum from the Contract Area; provided, however, that the costs and expenses of Development and Production Operations in respect of any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shall be recovered only from Available Petroleum produced from such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Such Petroleum to which CONTRACTOR is entitled for the purpose of recovering its costs and expenses 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st Petroleum".
- 9.5 To the extent that costs or expenses recoverable under Section 9.4 exceed the value of all Cost Petroleum from the Contract Area, the excess shall be carried forward for recovery in the next succeeding accounting period and in each succeeding accounting period thereafter until fully recovered, but in no case after termination of this Contract.

¹⁸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p9~11

7. 생산물의 분배(production split)

육상광구의 경우 가용석유에서 비용회수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석유·가스(이윤석유, profit petroleum)는 다음의 비율로 분배된다.

<원유>

생산량 (배럴/일)	국영석유가스공사(%)	계약자(%)
0-10,000	60	40
10,001-20,000	65	35
20,001-50,000	70	30
50,001-100,000	80	20
100,001-150,000	85	15
>150,000	90	10

<가스>

생산량 (백만 cubic meters/일)	국영석유가스공사(%)	계약자(%)
Up to 60	60	40
61-120	65	35
121-300	70	30
301-600	80	20
601-900	85	15
>900	90	10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9

COST RECOVERY AND PROFIT ALLOCATION

9.7 With respect to each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Available Petroleum not taken for purposes of payment of royalty under Section 10 nor taken as Cost Petroleum in an accounting period, as described in Section 9.4 and 9.5, shall be "Profit Petroleum" and allocated between MOGE and CONTRACTOR according to the following incremental scale, based on average daily production, in an accounting period, from the relevant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a) Crude Oil

Production Rate in Barrels per Day	MOGE Share (%)	CONTRACTOR Share (%)
0-10,000	60	40
10,001-20,000	65	35
20,001-50,000	70	30
50,001-100,000	80	20
100,001-150,000	85	15
>150,000	90	10

b) Natural Gas

Production Rate in Million Cubic Feet per Day	MOGE Share (%)	CONTRACTOR Share (%)
Up to 60	60	40
61-120	65	35
121-300	70	30
301-600	80	20
601-900	85	15
>900	90	10

연안광구의 경우 국영석유가스공사가 원유는 60~90(또는 85)%의 비율로, 가스는 65(또는 60)~90%의 비율로 이윤석유를 분배한다. 심해광구의 경우 국영석유가스공사가 원유는 60 (또는 55)~85(또는 80)%의 비율로, 가스는 60(또는 55)~90(또는 80)%의 비율로 이윤석유를 분배한다¹⁹.

8. 로열티(royalty)

생산물분배계약 종류에 관계없이, 생산물분배계약상 로열티율은 계약지역 가용석유의 12.5%이다²⁰.

<p>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p> <p>SECTION 10</p> <p><u>ROYALTY</u></p> <p>10.1 CONTRACTOR shall pay to the Government, a Royalty equal to twelve point five percent (12.5%) of the value of Available Petroleum from the Contract Area,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 and adjusted by deducting an amount equal to the cost of transportation from the Delivery Point to the usual point of export.</p>
--

¹⁹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p9~11

²⁰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p9~11

9. 보너스(bonus)

서명보너스(signature bonus)는 유전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탐사권 확보에 대해 주최국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자는 생산물분배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영석유가스공사에 서명보너스를 지급하여야 한다. 표준 생산물분배계약에는 서명보너스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11 BONUSES

11.1 Signature Bonus

CONTRACTOR shall,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signing of this Contract by the Parties, pay to MOGE the sum of US Dollars (US\$) as a Signature Bonus. Such amount shall not be credited to CONTRACTOR's minimum work commitment under Section 5 and shall not be recoverable from Cost Petroleum under Section 9.

계약자는 생산량에 비례한 생산보너스(production bonus)도 주최국인 미얀마에 지급하여야 한다. 육상광구의 경우 USD 500,000부터 USD 6,000,000까지의 범위 내의 금액을 생산량에 비례하여 국영석유가스공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해상광구의 경우 USD 1,000,000부터 USD 10,000,000까지의 범위 내의 금액을 생산량에 비례하여 국영석유가스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11 BONUSES

11.2 Production Bonuses

11.2.1 Crude Oil:

CONTRACTOR shall pay the following "Crude Oil Production Bonuses" to MOGE with respect to each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for Crude Oil productions:

- (a) US Dollars Five Hundred Thousand (US\$ 500,000) within thirty (30) days of approval of the Development Plan.
- (b) US Dollars One Million and Five Hundred Thousand (US\$ 1,500,000)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date when total average daily Crude Oil Production from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ver any consecutive ninety (90) days period reached Ten Thousand (10,000) Barrels per day.

- (c) US Dollars Two Million (US\$ 2,000,000)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date when total average daily Crude Oil Production from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ver any consecutive ninety (90) days period reached Twenty Thousand (20,000) Barrels per day.
- (d) US Dollars Three Million (US\$ 3,000,000)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date when total average daily Crude Oil Production from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ver any consecutive ninety (90) days period reached Fifty Thousand (50,000) Barrels per day.
- (e) US Dollars Four Million (US\$ 4,000,000)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date when total average daily Crude Oil Production from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ver any consecutive ninety (90) days period reached One Hundred Thousand (100,000) Barrels per day.
- (f) US Dollars Six Million (US\$ 6,000,000)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date when total average daily Crude Oil Production from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ver any consecutive ninety (90) days period reached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150,000) Barrels per day.

11.2.2 Natural Gas:

CONTRACTOR shall pay the following “Natural Gas Production Bonuses” to MOGE with respect to each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for Natural Gas productions:

- (a) US Dollars Five Hundred Thousand (US\$ 500,000) within thirty (30) days of approval of the Development Plan.
- (b) US Dollars One Million and Five Hundred Thousand (US\$ 1,500,000)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date when total average daily Natural Gas Production from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ver any consecutive ninety (90) days period reached Sixty Million Cubic Feet (60,000,000 ft³) per day.
- (c) US Dollars Two Million (US\$ 2,000,000)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date when total average daily Natural Gas Production from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ver any consecutive ninety (90) days period reached One Hundred and Twenty Million Cubic Feet (120,000,000 ft³) per day.
- (d) US Dollars Three Million (US\$ 3,000,000)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date when total average daily Natural Gas Production from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ver any consecutive ninety (90) days period reached Three Hundred Million Cubic Feet (300,000,000 ft³) per day.
- (e) US Dollars Four Million (US\$ 4,000,000)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date when total average daily Natural Gas Production from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ver any consecutive ninety (90) days period reached Six Hundred Million Cubic Feet (600,000,000 ft³) per day.
- (f) US Dollars Six Million (US\$ 6,000,000)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first date when total average daily Natural Gas Production from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over any consecutive ninety (90) days period reached Nine Hundred Million Cubic Feet (900,000,000 ft³) per day.

10. 국내소비

생산물분배계약 종류에 관계없이, 계약자는 원유의 경우 계약자 이윤석유 지분의 20%를, 가스의 경우 계약자 이윤석유 지분의 25%를 미얀마 역내에서 시장가격의 90%의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²¹.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14

DOMESTIC CRUDE OIL AND NATURAL GAS REQUIREMENT

14.1 The CONTRACTOR shall after Commercial Production of Crude Oil commences, fulfill its obligation toward the supply of the Domestic Crude Oil market in Myanmar by making a share of its entitlement available to MOGE. CONTRACTOR's obligatory share of the domestic market obligation will be in the proportion that CONTRACTOR'S entitlement to Crude Oil under Section 9.4 (for recovery of Operating Costs) and Section 9.7 (for division of remainder) bears to all Crude Oil produced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e price MOGE shall pay CONTRACTOR for such Crude Oil up to an amount not to exceed twenty percent (20%) of the Crude Oil allocated to CONTRACTOR under Section 9.7 hereof shall be the equivalent of ninety percent (90%) of the value per Barrel of Crude Oil during the accounting period in question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 hereof, payable in US Dollars within thirty (30) days after lifting. For any amount of Crude Oil in excess of that limit, required to satisfy CONTRACTOR's Domestic Market Obligation, the price shall be one hundred percent (100%) of the value per barrel of Crude Oil during the accounting period in question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 hereof, payable in US Dollars as set out above.

14.3 The provisions of Section 14.1 and 14.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duction of Natural Gas, provided, however that CONTRACTOR's obligatory share of the domestic market obligation will be in the proportion that CONTRACTOR'S entitlement to Natural Gas under Section 9.4 (for recovery of Petroleum Costs) and Section 9.7 (for division of remainder) bears to all Natural Gas produced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or twenty-five percent (25%) of the Natural Gas allocated to CONTRACTOR under Section 9.7, whichever is less.

11. 기금

생산물분배계약 종류에 관계없이, 계약자는 탐사기간 동안 매년 USD 25,000을, 생산기간 동안 매년 USD 50,000을 교육기금(training fund)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계약자 이윤 석유 지분의 0.5%를 조사개발기금(research and development fund)으로 납부하여야 한다²².

²¹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p9~11

²²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p9~11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15
EMPLOYMENT AND TRAINING

15.2 CONTRACTOR shall spend a minimum of US Dollars Twenty Five Thousand (US\$25,000) per Contract Year during the Exploration Period of this Contract f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urposes:

- a) the purchase for MOGE of advanced technical literature, data and scientific instruments;
- b) to train MOGE personnel and to send qualified MOGE personnel to selected accredited universities;
- c) to send selected MOGE personnel to special courses offered by accredited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or other recognized organizations in the fields of petroleum science, engineering and management.

15.3 Upon commencement of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Period for the first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a, CONTRACTOR's minimum expenditure commitment under this Section shall be increased to US Dollars Fifty Thousand (US\$50,000) per Contract Year.

15.7 The CONTRACTOR shall establish a "Research & Development Fund" in the sum of zero point five (0.5) percentage of its share of Profit Petroleum and the expenditure of this Fund will be determined in consultation with MOGE.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15 shall not be recoverable from Cost Petroleum

12. 양도

계약자는 국영석유가스공사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 자신의 권리 및 이익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양도차익은 다음의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Union Tax Law 2014 시행 이후, 구간 계산이 US\$가 아니라 차트(Kyat)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정산시점에 따라 구간 계산의 차이가 발생한다.²³

구간	세율
US\$ 100백만 이하	40%
US\$ 100백만 초과 ~ US\$ 150백만 이하	45%
US\$ 150백만 초과	50%

²³ Norton Rose Fulbright,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in Myanmar, 2015. 10.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33109/oil-and-gas-exploration-and-production-in-myanmar>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17

RIGHTS AND OBLIGATIONS OF MOGE AND CONTRACTOR

17.2 CONTRACTOR shall:

- (g) have the right to sell, assign, transfer, convey or otherwise dispose of all or any part of its rights and interests under this Contract to an Affiliate or other parties only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MOGE. The consent by MOGE on this matter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Provided that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elsewhere in the Contract, CONTRACTOR is liable to pa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he following trenches out of the Net Profit made on the sale or transfer of the shares in the Company formed under Section 5.1:

- | | |
|---|-----|
| (i) If the amount of Net Profit is up to US Dollars 100 Million | 40% |
| (ii) If the amount of Net Profit is between US Dollars 100 Million and US Dollars 150 | 45% |
| (iii) If the amount of Net Profit is over US Dollars 150 Million | 50% |

13. 분쟁해결

2013년 4월, 미얀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하였다. 뉴욕 협약 비준 직후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미얀마 국내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외국 중재판정이 미얀마에서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나, 2016. 1. 5. 구 중재법(Arbitration Act 1944)을 대체한 개정 중재법(2016 Pyidaungsu Hluttaw (Union Parliament) Law No. 6, “2016 중재법”)이 시행됨으로써 그러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 2016 중재법의 내용은 국제표준과 유사하다²⁴.

14. 해지

계약자가 생산물분배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국영석유가스공사는 생산물분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의 모든 장비는 국영석유가스공사로 이전된다.

²⁴ Norton Rose Fulbright,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in Myanmar, 2015. 10.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33109/oil-and-gas-exploration-and-production-in-myanmar>

MODEL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shore Blocks)

SECTION 25
TERMINATION

25.3 If the CONTRACTOR is in material breach of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MOGE shall give notice to remedy such breach within sixty (60) days. If CONTRACTOR fails to remedy such breach within the said sixty (60) days, MOGE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Contract by delivering a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CONTRACTOR. Once terminated, the unexpended portion of the minimum expenditure as specified in Section 5.2 to 5.4 and all equipment purchased by the CONTRACTOR and brought into Myanmar under Section 16.1 shall pass to MOGE.

V. 외국인투자법 및 회사법**1.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2012) 및 관련 법규****(1) 개관**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외국인투자법이다. 외국인투자법은 국가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개발 및 수출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조세감면 및 장기임대차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가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얀마투자위원회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고 투자허가(MIC permit)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투자허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법 상 혜택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투자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투자방식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미얀마투자위원회가 공고 및 발표를 통해 정한 사업 이외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자본으로 100%를 투자하는 방식
- 외국인이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고자 할 때, 외국인자본과 내국인자본의 비율을 양쪽의 협의에 따라 합작투자계약서에 정하는 방식
- 합작투자계약서에 BOT(Built Operate Transfer), BTO(Built Transfer Operate) 방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을 정하여 정부 및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식

(3) 투자제한분야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구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2016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Finance)로 개편됨)는 외국인투자법 시행령(Foreign Investment Rules 2013)을 개정하였다.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에서는 내국인 및 내국법인을 위하여 특정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그리고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소액 투자로 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미얀마투자위원회는 공고(MIC Notification No. 26/2016)를 통해 중소기업의 광물개발사업, 비취·보석 탐사·채굴사업, 강 연안에서 이뤄지는 금을 포함한 기타 광물자원 개발 사업 등을 외국인투자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순서	업종	예시
1	외국인투자금지	· 중소기업의 광물 채굴업 · 비취, 보석 탐사 사업채굴업 · 강 연안에서 이뤄지는 금을 포함한 기타 광물 자원 개발 사업 등 12 개
2	내국인과의 합작투자 형태 승인	· 중소기업의 전기 발전업 · 국내 / 국제 항공 운송업 등 27 개
3	내국인과의 합작투자 형태 + 관련 부서 허가	· 제약업 · 정기 신문 발행업 등 42 개
4	내국인과의 합작투자 형태 + 기타 조건	· 담배 제조업 · 신규 화학공장 건설·장비설치 및 기존 화학공장 보수 수공운영업 등 21 개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100% 지분까지 투자할 수 있으나, 미얀마투자위원회나 관련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취득하여야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

(4)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 절차

외국인투자자가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소정의 양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함께 합작투자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이사회 및 임직원 명단, 직원 복지에 관한 계획서, 환경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얀마투자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위원회의 업무량 등에 따라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미얀마회사법상 절차에 따른 회사의 설립을 투자기업청(The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기업청은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임시설립등록증(Temporary Incorporation Certificate)을 발급한다.

사업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약 2주 경과 후 미얀마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제안평가팀(the Investment Proposal Assessment Team)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다. 투자제안평가팀이 회의에서 사업계획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환경보존계획 등 투자제안평가팀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얀마투자위원회는 투자제안평가팀 회의 후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안에 따라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5)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혜택

1) 조세 혜택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를 받은 회사는 외국인투자법 제27조 (a)에 따라 사업개시 초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나아가,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를 받은 회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업무상 사용되는 설비·기계·기구·건물 기타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 외국인 피고용자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미얀마 거주자의 세율 적용
- 손실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손금 이월 상계
- 건설기간 동안 실제 사업에 요구되는 수입 기계·장비·도구·부품·자재 등에 대한 관세 기타 조세의 감면
- 투자허가기간 동안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규모가 증가한 경우, 이러한 투자규모 증가에 따라 추가로 수입한 기계·장비·도구·부품·자재 등에 대한 관세 기타 조세의 감면

2) 장기임대차

미얀마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1987년 부동산양도제한법(the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Law 1987)에 따라, 정부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과 외국회사는 미얀마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얀마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승인한 사업을 위해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아래의 토지에 관한 임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 정부부처나 정부기관이 소유한 토지
- 미얀마 내국인의 사유지

미얀마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의 사업의 성격과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토지 임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가 임대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토지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최대 10년씩 2회까지 임대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투자보장

외국인투자법은 정부가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투자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국유화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2. 회사 관련 법규

(1) 회사 관련 법규

모든 내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의 회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얀마의 회사 관련 법령은 (i)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를 규율하는 미얀마회사법(the Myanmar Companies Act 1914), (ii) 감자(減資) 및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의 청산절차에 적용되는 미얀마회사 규칙(the Myanmar Companies Rules 1940), (iii) 기타 사항을 규율하는 미얀마회사규정(the Myanmar Companies Regulations) 및 (iv)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의 설립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특별회사법(the Special Company Act 1950)으로 구성된다.

(2)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내국회사는 미얀마 국민이 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외국회사는 미얀마에 설립된 회사 중 외국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단, 특별회사는 제외).

(3) 주식의 이전

미얀마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주식 이전의 등록 신청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할 수 있다.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사가 주식을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이전하려면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회사는 주식이 이전된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투자기업청에 양수인의 국적을 통지하여야 한다. 미얀마투자위원회는 위 신청서를 접수한 후 (i) 이전되는 주식의 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ii) 주식의 이전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지, 그리고 (iii) 양수인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주식의 이전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이 승인서를 주식양도신청서에 첨부하여 투자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얀마회사법(MCA)에 따른 회사 설립 절차

미얀마에 회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투자기업청에 회사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투자기업청으로부터 미얀마회사법 제27조 A에 따른 영업허가(Permit to Trade)를 받은 후 회사설립 신청을 회사등록사무소(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첨부서류 및 등록비와 함께 투자기업청에 제출하면, 회사는 임시설립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그 후 회사는 미얀마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은행에서 송금증명서(Credit Advice)를 발급받아 투자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송금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투자기업청은 1주일 이내에 최종 법인설립인가증(Final Incorporation Certificate)을 발급한다.

미얀마 내 모든 회사의 법인등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는 내국회사, 외국회사, 외국회사의 지점, 합작투자회사, 비영리법인 모두에 해당한다. 회사는 법인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투자기업청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VI. 토지제도

1. 개관

2008년 미얀마 헌법에 의하면 미얀마의 모든 토지와 천연자원의 궁극적 소유자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얀마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도 미얀마 헌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일부 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에 외국인투자자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토지의 유형은 (i) 자유소유지(Freehold Land or Inherited Land), (ii) 양도토지(Grant Land; 국가에 소유권이 있고 개인은 10~90년까지 사용권을 보유할 수 있는 토지), (iii) 정부임대토지(Government Leases;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임대하는 토지) 및 (iv) 집합소유지(Collectively Own Land)가 있다. 한편, 미얀마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2. 투자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외국인투자자가 사업상 아래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종교용 토지
- 관련 부처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토지

-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된 토지
- 소송의 대상인 토지
- 국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용을 제한하는 토지
- 투자자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소음이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거나 도심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3. 토지사용

(1) 부동산양도제한

미얀마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1987년 부동산양도제한법(the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Law 1987)에 따라, 정부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과 외국회사는 미얀마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얀마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는 부동산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가 될 수도 없다. 나아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토지사용

미얀마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승인한 사업을 위해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정부부처나 정부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미얀마 내국인의 사유지에 관한 임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미얀마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의 사업의 성격과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토지 임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가 임대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토지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최대 10년씩 2회까지 임대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임대료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시가로 결정되어야 하고 각 지방정부의 기준가격과 일치하여야 하나, 기준가격이 공개된 적은 없다. 임대료가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합의된 경우 미얀마투자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임대료를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외국인투자자는 임차한 토지를 미얀마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조건 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전대(sub-lease), 저당권의 이전,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사업권의 양도를 할 수 있다.

VII. 환경보호

1. 환경책임 관련 법규

자원환경보존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외국인투자자가 미얀마의 환경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부는 환경보전법(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과 그 하위규정인 환경보전규정(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Rules 2014), 환경영향평가절차(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2015), 국가환경품위(배기가스관련)가이드라인(the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Emission) Guidelines 2015) 등을 제정하였다.

2. 환경영향평가 등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환경조사(Initial Environmental Examination),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또는 환경관리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이 요구된다. 자원환경보존부는 이 중 어느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지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제안에 대한 동의서(Non-Objection Letter)에 기재하여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미얀마투자위원회는 자연환경보전부에 외국인투자자가 제출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방지책 또는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며, 자연환경보전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한다.

(1) 초기환경조사, 환경영향평가, 환경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보전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로서, 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시행에 따라 신체적,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는 절차이다. 자연환경보전부가 해당 프로젝트를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프로젝트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관리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기환경조사는 외국인투자자의 프로젝트에 따른 사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최초의 조사로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되며,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예비조사로 볼 수도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초기환경조사보고서만 제출하여도 되는 경우도 있다.

환경관리계획은 외국인투자자의 프로젝트에 따른 사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방지, 완화, 감독하려는 방안에 관한 문서를 의미한다. 환경보전규정(EC Rules)의 시행 전에 초기환경조사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이미 시행 중이었다라도, 환경영향평가절차에 따른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환경보전규정 제55조). 실무 상 환경관리계획은 초기환경조사나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부의 승인

외국인투자자는 환경영향평가절차의 별표 A를 통해 프로젝트가 초기환경조사나 환경영향평가대상인 141개의 투자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자연환경보전부의 승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투자 유형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 또는 생산능력 등에 따라 초기환경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앞서 언급한 자연환경보전부의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부 산하 환경영향평가기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ganization)에 등록된 제3자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자의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미얀마투자위원회는 보고서 제출 이전에 투자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미얀마투자위원회는 투자허가서에 보고서 제출기한을 명시할 수 있다.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자연환경보전부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여 프로젝트가 초기환경조사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초기환경조사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미얀마어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환경조사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약 15일이 소요되나, 실무 상 자연환경보전부의 업무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절차에 따르면 초기환경조사보고서 접수 후 승인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며,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접수 후 승인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되나 실무적으로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3) 위반에 대한 조치

환경영향평가절차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환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감시하고,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벌칙 등이 부과된다. 외국인투자자가 환경 관련 법률·규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투자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 외에 투자허가의 취소, 투자허가 금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부는 투자허가의 취소일 최소 1개월 전에 이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물, 설치된 기계설비, 동산, 투자허가의 철회일 전에 추출한 광물 등을 반출할 수 있다.

VIII. 조세제도

1. 개관

미얀마에는 현재 21종류의 국세와 관세가 있으며, 크게 아래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국내 생산 및 소비에 부과되는 조세
- 소득 및 소유에 부과되는 소득세
- 관세
- 국가 소유 재산 사용에 관한 조세

미얀마에서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의 조세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소득세법(the Income Tax Law), 상업세법(the Commercial Tax Law), 특별상품법(the Special Goods Law), 외국인투자법, 특별경제구역법(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및 이에 관한 규정 및 규칙 등이 있다. 이 중 1974년에 공포된 소득세법은 소득세 규칙(the Income Tax Rules), 소득세 규정(the Income Tax Regulation), 예산법(the State Budget Law), 연방조세법(the Union Tax Law) 및 수시로 재무세입부가 공포하는 고시에 의해서 보완된다.

2. 석유·가스개발분야의 주요 조세제도

석유·가스개발분야와 관련된 미얀마 주요 조세제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조세	개요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25%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이전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세율(단,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자신이 받은 통화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교환 또는 이전된 고정 자산의 총 가치가 연간 10,000,000 차트(Kyats)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및 가스(Oil and Gas) 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100 billion 차트(Kyats) 이하: 40%

조세	개요															
	<p>100 billion 차트(Kyats) 초과 ~ 150 billion 차트(Kyats): 45%</p> <p>150 billion 차트(Kyats) 초과: 50%</p> <p>- 석유 및 가스(Oil and Gas) 사업이 아닌 경우: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공개 원천소득(Income Escaped from Tax Assessment): 취득의 원천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동산, 동산, 현금에 관하여는 일괄적으로 30%의 세율에 따른 미공개 원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자산의 구매, 건축 또는 취득과 관련된 미공개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율이 적용됨. 															
<p>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세율 <table border="1" data-bbox="446 678 1205 942"> <thead> <tr> <th>소득의 종류</th> <th>거주자 세율</th> <th>비거주자 세율</th> </tr> </thead> <tbody> <tr> <td>배당</td> <td>0%</td> <td>0%</td> </tr> <tr> <td>이자</td> <td>0%</td> <td>15%</td> </tr> <tr> <td>라이선스, 상표, 특허권 등에 대한 로열티</td> <td>15%</td> <td>20%</td> </tr> <tr> <td>외국인-외국회사와 정부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른 상품 및 용역 대금의 지급</td> <td>2%</td> <td>3.5%</td> </tr> </tbody> </table> • 미얀마와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Double Tax Agreement)에 따라 일정한 경우 경감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소득의 종류	거주자 세율	비거주자 세율	배당	0%	0%	이자	0%	15%	라이선스, 상표, 특허권 등에 대한 로열티	15%	20%	외국인-외국회사와 정부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른 상품 및 용역 대금의 지급	2%	3.5%
소득의 종류	거주자 세율	비거주자 세율														
배당	0%	0%														
이자	0%	15%														
라이선스, 상표, 특허권 등에 대한 로열티	15%	20%														
외국인-외국회사와 정부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른 상품 및 용역 대금의 지급	2%	3.5%														
<p>상업세 (Commercial Ta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세는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다른 나라의 물품용역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또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와 유사한 세금임. • 국내 생산품(국내소비), 수입품 중 특별상품법(Special Goods Tax Law 2016)에 따른 16 종류의 특별상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별상품세율이 적용됨. <table border="1" data-bbox="446 1329 1205 1466"> <thead> <tr> <th>특별상품 (일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휘발유, 디젤, 등유, 항공유</td> <td>5%</td> </tr> <tr> <td>천연가스</td> <td>8%</td> </tr> </tbody> </table> • 그 외에 면세 대상 품목을 제외한 국내 생산품(국내소비),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진 용역, 수입품에 대하여는 5%의 상업세율이 적용됨(단, 과세연도 중 상품 판매와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 20,000,000 차트(Kyats) 이하인 경우에는 상업세가 부과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상품의 수출에는 상업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일부 상품의 	특별상품 (일부)	세율	휘발유, 디젤, 등유, 항공유	5%	천연가스	8%									
특별상품 (일부)	세율															
휘발유, 디젤, 등유, 항공유	5%															
천연가스	8%															

조세	개요								
	<p>수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업세율이 적용됨.</p> <table border="1" data-bbox="446 336 1206 519"> <thead> <tr> <th>상품 (일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석유</td> <td>5%</td> </tr> <tr> <td>천연가스</td> <td>8%</td> </tr> <tr> <td>전력</td> <td>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생산자는 판매 상품에 부과되는 상업세에서 상업세규칙 (Commercial Tax Regulations)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또는 중간재에 부과된 상업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용역의 공급자는 개발비 등에 부과된 상업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상품 (일부)	세율	석유	5%	천연가스	8%	전력	8%
상품 (일부)	세율								
석유	5%								
천연가스	8%								
전력	8%								
<p>관세 (Customs and Import Du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는 미얀마 관세율표의 과세 표준에 따라 과세하며, 세율의 범위는 0~40%임. 자동차, 사치품, 보석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됨. • 외국인투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건설 기간 동안 필요로 수입한 기계, 장비, 도구, 부품, 자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면됨 								
<p>인지세 (Stamp Du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인지는 재판절차에 사용되며, 법원비용법(Court Fees Act)에 따라 산정됨. 인지세율은 문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 소송 외 인지는 미얀마 인지법(the Myanmar Stamp Act)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기술 이전 및 회사, 동업기업, 합작투자회사 등 여러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체결한 계약, 주식 양도, 저당권 이전 등 다양한 법률문서에 부과됨. 법률문서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율은 미얀마 인지법 별표에 기재되어 있음. 								

〈참고문헌〉

- 법무부, 2013 미얀마 비즈니스가이드
- 외교부, 2013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 코트라, 2016 미얀마 진출전략(2015)
- 코트라, 자원개발진출가이드(2008)
- 코트라,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2007)
- Getting The Deal Through, Oil 2016, Myanmar
- Getting The Deal Through, Gas 2016, Myanmar
- Myanmar Legal Services, Myanmar Upstream Oil & Gas Sector (2016. 5. 16.)
- [http://www.myanmarlegalservices.com/wp-content/uploads/pdf/Myanmar-Upstream-Oil&Gas-Sector\(ATC %20160516\) \(1931596 1\).PDF](http://www.myanmarlegalservices.com/wp-content/uploads/pdf/Myanmar-Upstream-Oil&Gas-Sector(ATC%20160516)(1931596%201).PDF)
- Norton Rose Fulbright,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in Myanmar (2015. 10.)
-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33109/oil-and-gas-exploration-and-production-in-myanmar>
- UK Trade &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British companies in Burma's oil and gas sector (2015. 1.)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93763/UKTI Burma - Oil and Gas Report - Jan 2015.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93763/UKTI_Burma_-_Oil_and_Gas_Report_-_Jan_2015.pdf)